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2018. 3.



보건복지부

2018년 변경되는 지침 주요 내용

구분	2017년(기존)	2018년(변경)	변경사유				
개요	· 해당사항 없음	· 인권교육 수행체계 추가	· 기관별 역할 구체적 명시				
인권교육	· 설치·운영자 교육 - 교육대상: 설치·운영자	· 시설장 인권교육 - 교육대상: 시설장	· 법 개정 (설치·운영자→시설장)				
	· 교육기관 - 정신의료기관 50병상 이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1병상 이상 49병상 이하: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정신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교육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1병상 이상 49병상 이하</td> <td>· 국립정신병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td> </tr> <tr> <td>50병상 이상</td> <td>·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td> </tr> </table>	1병상 이상 49병상 이하	· 국립정신병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0병상 이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실시 기관 현행화
	1병상 이상 49병상 이하	· 국립정신병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0병상 이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					
· 적용대상 - 교육의무가 없는 기관 중에 인권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권교육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음	· 교육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권장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교육 이수 근거 마련					
· 인권강사 자격	· 인권강사 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전문 인권강사 양성교육 이수 후 보건복지부에 강사 등록을 마친 자 (신설) - 당사자나 당사자 가족(보조 자격으로 제한) (신설)	· 인권강사 범위 확대					
인권강사교육	· 교육시간 - 강사양성 교육: 16시간 - 보수교육: 4시간	· 교육시간 - 강사양성 교육: 21시간 - 보수교육: 6시간	· 인권강사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시간 증가				
	· 인권강사 추천 기준	· 인권강사 추천 기준 - 정신장애인 가족 중 전문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신설)	· 인권강사 범위 확대				
	· 강사 자격 유지 - 강의 실적 미비 또는 기타 문제 발생 시 자격박탈 가능	· 강사 자격유지 - 강의 실적 미비(2년 내 1번 이상의 강의)	· 인권강사 자격 유지 조건 명확화				

구분	2017년(기준)	2018년(변경)	변경사유
전문 교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의 의무 - 1회 소집 교육 시 신청자가 30명 이상 모집되었을 때 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역할 ○ 교육실시 - 소집교육 운영 시 모집인원이 30명 이하일 경우 교육운영을 취소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명 이하 소집할 경우도 운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교육 실적의 중간보고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 모니터링 근거 마련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대회 및 직능별 보수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 전문교육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 등을 통해 확인을 받고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대회 및 직능별 보수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전협의 필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인권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실시기관으로부터 실시보고를 받고 인권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일원화하여 교육관리 효율화
붙임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직급별 구분 있음(시간당 20~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내용 수정) - 공직자 강의료는 직급 구별 없이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사례금 총 한도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일부개정

1 목 적

-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와 가치,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권문화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권침해 감소를 통해 정신장애인 보호

2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제1항
※ [붙임 1] 참고

3 의무교육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또는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하며, 낮병동(주간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됨

4 인권교육의 기본 내용

-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5 인권교육 수행체계

- 인권교육 운영체계



- 기관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정책의 종합 계획 수립·조정·평가
- 중앙단위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 정책 추진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화 제도 운영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위탁 운영 및 관리

2) 시·도 및 시·군·구

-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인권 및 권익보호
- 인권교육 일정 홍보 및 의무 이수 안내
- 인권교육 결과 취합 및 보고
- 인권교육을 위한 시설편의 및 강사지원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 지침 수립 지원
- 인권강사 양성, 강사 관리, 보수교육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 개발 및 운영
- 전문교육기관 인권교육 지원
- 인권교육 표준 강의안 개발·배포

4) 전문교육기관

- 지역사회 중심 인권교육 연간계획 수립·수행·관리
- 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
- 인권강사 추천 및 관리

5) 정신건강증진시설

- 인권교육 참여
- 시·군·구 결과보고

인권교육의 종류 및 내용

1 인권교육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시설장과 종사자 대상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교육 대상	교육방법			교육기관		
		소집	방문	사이버			
시설장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	○	×	×	정신 의료 기관	49병상 이하	- 국립정신병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50병상 이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요양시설협회 협업)	
종사자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소집, 방문교육) 권역 전문교육기관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 교육내용

-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 알기, 인권사례, 인권실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되, 교육기관이 인권 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구 분	교 육 내 용
인권알기	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이해: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 세계인권선언, MI원칙¹⁾, 장애인권리협약 등 •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
인권사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사례 및 인권 보호 사례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사례
인권실천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보호 제도 해설 - 환자의 기본권, 압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적 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등

3 교육방법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요구에 따라 소집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소집교육)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이 가능한 일정을 정하여 교육참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집합교육
 - (방문교육) 인권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전문교육기관에 사전 방문을 요청하여 전문교육기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1)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축약하여 'MI원칙'으로 칭함)

- 소집교육, 방문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이나 토론 등 교육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인권영화 상영 후 토론, 역할극, 인권보호 우수기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난이도를 구별하여 특화교육, 심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직종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인권교육 강사 자격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보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전문 인권강사 양성교육 이수 후 보건복지부에 강사등록을 마친 사람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내용 다양화 및 사례를 통한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족을 보조강사로 활용 가능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 가, 라, 마의 기관은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를 특별강사로 활용 가능

III

인권교육 운영방법

1 시설장 인권교육

○ 교육대상 :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 사실상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부원장 및 부시설장 포함
- 정신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외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시설장으로 보며, 정신건강의학과장이 여러 명인 경우 수석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시설장으로 봄

* 전문교육기관 교육 담당자는 교육대상 자격 확인 후 수강 승인해야 함

○ 교육기관

- 정신의료기관 시설장은 병원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별하여 교육을 실시함
- 정신재활시설장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정신요양시설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방문교육으로 실시함

연번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1	정신의료기관	1병상 이상 49병상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정신병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		50병상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가인권위원회
3	정신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협업)
4	정신재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교육시간 및 방법**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소집교육, 방문교육

○ **교육신청 방법**

- 전문교육기관 교육일정 확인 후 기관별 신청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https://hrp.kohi.or.kr>)에서 모든 전문교육기관 연간 일정 확인 가능

2] 종사자 인권교육

○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인권교육 의무대상임
- (정신의료기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또는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외 행정, 원무, 관리 전담직원까지 직접 고용된 직원은 의무 교육 대상임

[의무교육 대상 범위]

-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든 직원(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
 - 직접 고용된 직원인 경우,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임
 - 정신병원 내 타과 근무자(예: 치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
 - 식당, 청소, 경비, 운전 등 비치료 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
-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지원 부서 관리자 2명 이상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정신요양시설) 시설 근무 전 직원
- (정신재활시설) 시설 근무 전 직원
- 교육의무가 없는 기관 중 인권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사자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이수 권장)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실습 중이거나 자원봉사 등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외 근무자나 용역직원은 기관장 재량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종사자 중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당해년도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증빙서 첨부)

○ **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 【붙임3】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현황 참고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소집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소집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교육기관이 공지한 인권교육 일정에 맞춰 직접 사전 신청 후 교육에 참여
- (방문교육) 방문교육이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사전에 전문교육기관에게 방문교육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반드시 전문교육기관 주관으로 운영)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에서 이수가능하며 2년에 1회 이수로 제한함
 - * 인권교육 인정 사이버과정은 인권교육홈페이지(hrp.kohi.or.kr) 공지 게시판에 공지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도 사이버 인권교육을 운영하지 않음

- 소집·방문교육 운영 시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은 별도 운영(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함께 실시가능)

[2018년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짝수년도 출생자**
 - 당해연도 짝·홀수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출생연도를 대입하여 일치하는 자만 이수 가능함
 - 예시) 2018년 사이버 교육 이수 해당자 - 짝수년도 출생 종사자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
 - 2019년 사이버 교육 이수 해당자 - 홀수년도 출생 종사자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가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
- **2018. 11. 1.~ 12. 31. 기간 신규 채용자 익년 1월 이내 소집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

○ **교육 및 교육 이수자 관리**

- 교육기관은 인권교육 개설시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교육기관 담당자는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4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수료처리를 할 수 없음

○ **교육신청**

-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접수
- 교육기관이 제시한 다른 접수방법이 있을 경우 그 방법에 따름

① 인권교육 강사양성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함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장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강사양성교육 실시 전 인권교육 강사에 적합한 자를 보건복지부에 추천(서식4 작성 제출)
- 인권교육 강사 추천 대상자
 - 1)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건강복지센터의 장(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하여야 함)
 - 2)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3) 다음의 기관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붙임 3)

- 4) 위 해당 기관 외 소속의 정신과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5) 정신장애인 가족 중 가족강사양성과정(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주관) 이수 후 가족강사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교육대상: 전문교육기관장의 추천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자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2018년 과정명: 한눈에 보이는 인권교육
- 교육시간: 21시간
- 교육방법: 소집교육
-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회원 가입 후 교육 신청
 - *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과정은 별도 문의
- **인권교육 강사 자격유지 조건**
 - 강사양성교육을 이수 후 인권강사 활동 자격이 주어지며, 인권강사는 추천을 받은 해당 전문교육기관 내 인권강사로 소속되어 강사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강사자격 유지기간은 1년이며, 강사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강의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인권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정당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둠
 - *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 강사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그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②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

-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 2017년도 강사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권강사로서, 보수교육 신청 시점 기준으로 2년간 1회 이상의 강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시간: 6시간
- 교육방법: 소집교육
-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신청
 - * 강사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V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①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역할

- 인권교육 담당자 지정
 - 전문교육기관은 1명의 인권교육 책임자와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인권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 연초 해당지역 시설 장,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인권교육 실적 및 강사운영 실적을 익년 1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결과를 익년도 1월까지 이수자 명단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 인권강사 관리

- 해당 권역의 인권강사를 추천·관리할 수 있음
 - 인권강사 추천([서식4] 작성 후 보건복지부 제출)
- 국립정신병원은 해당 권역 내 인권강사 DB관리 · 운영

○ 교육실시

- 연 5회 이상 인권교육(소집 또는 방문) 실시
- 소집교육 운영 시 모집인원 30명 이하일 경우 교육 운영을 취소할 수 있음
- 2개 이상의 피교육기관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
 - 전문교육기관은 인권교육 이수자에게 교육이수증[서식3]이나 자체 수료증 양식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피교육기관별 이수 통보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함(소속, 직위, 성명, 교육종류, 이수일자 등 표기)
 - 전문교육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이수자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배부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발급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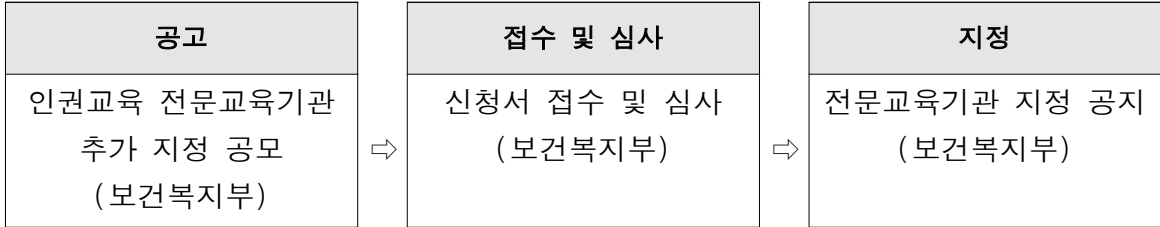
-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자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2) 피교육기관의 폐업 등으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 3) 기타 전문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 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강사에게 일정한 금액의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각 전문교육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함
 - 강사가 공직자인 경우 【붙임2】의 사항을 숙지하여 적용함
- 전문교육기관이 자체 교육에 종사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때는 해당 교육 계획에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의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0개 기관

권역(기관수)	지정 인권교육기관
부산경남(3)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시립정신병원
대구경북(2)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정신병원
광주전라(5)	국립나주병원, 전북 마음사랑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전·충남(3)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세종·충북(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경기(12)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은평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성안드레아병원,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강원(2)	국립춘천병원, 강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1)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 지정절차



○ 지정조건

- 정신보건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육수행 능력을 판단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권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관 교육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 4)

3 전문교육기관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는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추진현황 및 점검, 교육 운영기관 및 교육생 의견취합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교육실적의 중간보고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모니터링 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립정신병원, 기타 전문교육기관
- 국립병원: 기타 해당권역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인권교육

- 연간 교육계획에 기재된 교육일정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해당권역의 국립병원의 담당자와 같이 전문교육기관에 모니터링 실시

VI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의무와 역할

○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의 의무

- 시설의 장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종사자의 인권교육 시간과 교육을 받기 위한 이동시간은 정규근무시간 또는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 *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전후의 이동시간 : 교육출장, 공가, 시간 외 근무 등으로 인정
- 실무자의 인권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교육비, 일비, 교통비 등)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은 이수증 사본과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시설 장 및 종사자 교육실시 결과(서식2)를 작성하여 익년 1월까지 시·군·구(정신보건업무 담당자)에 제출

VII

행정사항

1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관할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이수 결과보고

- 시군구에서는 관할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인권교육 이수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하여 그 취합 결과를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익년 1월 까지 보건복지부로 시군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미이수 기관 명시)
 - * 인권교육 실시결과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및 인증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전문교육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위한 시설 편의와 강사지원을 할 수 있음

② 학술대회 및 직능별 보수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 각종 학회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 또는 직능별 보수교육, 기타 정기총회 및 워크숍 일정과 함께 인권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전협의 필요
- 인권교육(4시간 이상)은 학술대회, 보수교육 등과 구분하여 별도의 시간으로 편성·운영해야 함
 - * (예) 보수교육이 8시간일 경우, 인권교육을 겸한 보수교육 운영 시 전체 보수교육 시간은 인권교육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이 되어야 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인권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실시기관으로부터 실시보고를 받고 인권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③ 교육비 징수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강사비, 교재 제작비, 장소 임대료 등)를 징수할 수 있음

④ 인권교육 홈페이지 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인권교육 홈페이지(hrp.kohi.or.kr)를 운영·관리하여 교육대상자가 각 기관의 인권교육 계획과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강사 명단, 관련 법령 및 인권교육 정보, 강의 참고자료 등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유

서식 1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통합)

인권교육	전문교육 기관명		교육종류 (해당칸에 ○표시)	1. 강사 양성·보수 교육 2. 운영자 교육 3. 종사자 교육 3-1. 기관 소집교육 3-2. 강사 방문교육
	교육장소		교육일	20 . . .(회차)
신청인 (기관)	시설명	<i>* 허가(신고)증 상의 명칭 기재</i>		시설종류 (해당칸에 ○표시)
	소재지	(시도) _____(시군구)_____		
	강사·운영자 교육대상자	성명 : 직위 :	종사자 교육대상자	외 ()명 <i>*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명단 붙임</i>
	연락처	전화번호 : _____ 핸드폰 : _____ 이 메 일 : _____ <i>*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시설 내에서 참가를 주관(연락)하는 자를 기재합니다.</i>		

신청기관(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장 귀하

* 붙임 명단 양식

번호	교육차수	교육일	교육종류	성명	직위	자격	비고
1	2차	6.2.	강사양성교육	홍길동	운영자	의사	
2	1차	9.3.	종사자교육	장길산	사회사업과장	임상심리사	
3							

서식 2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결과보고서(피교육기관용)

20 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보고서

1. 총 괄

시설현황				피교육자 (의무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시도	시군구	종류	시설명	대상 인원	실교육 인원	교육 회수	교육일시	교육 시간	종류	장소명
서울	강남구	정신의료 기관	00정신병원	00명	00명	2회	8.20(목)13:00	4시간	교육기관	신경정신의학회 서울지부
							9.24(목)13:00	4시간	당해시설	의국 회의실
		정신요양 시설		00명	00명	1회	10.1(목)13:00	4시간	당해시설	4층 강당
		사회복지 시설							교육기관	정신재활시설협회 경북지부

2. 교육 결과

- 일 시 : 20 . . (목) 14:00~18:00
- 장 소 : 00 요양시설 00관 4층 강당
- 교육내용

시간	주제	방법	강사		비 고
			강사명	소속기관명	
14:00-14:50 (50분)	1.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강의, 시청각자료			
15:00-15:50 (50분)	2.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16:00-17:30 (90분)	3.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보호 제도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청구 등	강의, 질의응답			
17:30-18:00 (30분)	4. 병동별 토론	토론			

○ 교육인원

(단위 : 명)

구분	의무교육 대상자							권장교육대상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	작업	학생
종사자 인원									
실교육 인원									

3. 교육 증빙서류

○ 피교육자 명단(의무교육대상자만 제출) : *교육이수증의 이수자명단과 일치해야 함*

연번	부서	직종	성명	서명
1	3병동	간호사	유관순	

○ 교육현장 사진

서식 3

인권교육 이수증

제(기관부여번호) - 호 (전문교육기관 보관용)

인 권 교 육 이 수 증

소속 기관	기관명 <small>*개설허가신고증 명칭</small>	소재지 <small>*시군구명칭</small>		
	종별	<input type="checkbox"/> 정신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정신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정신재활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교육생	성명	교육기관 확인		
교육 이수 내용	<input type="checkbox"/> 교육 종류 :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 <input type="checkbox"/> 이수시간 : 시간		<small>※ 확인자 서명</small>	
<p>위 사람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50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상기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발급 기관명)(직인)</p>				

제(기관부여번호) - 호 (교육 이수자 보관용)

인 권 교 육 이 수 증

소속 기관	기관명 <small>*개설허가신고증 명칭</small>	소재지 <small>*시군구명칭</small>		
	종별	<input type="checkbox"/> 정신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정신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정신재활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교육생	성명	교육기관 확인		
교육 이수 내용	<input type="checkbox"/> 교육 종류 :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 <input type="checkbox"/> 이수시간 : 시간		<small>※ 확인이 없으면 무효함.</small>	
<p>위 사람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50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상기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발급 기관명)(직인)</p>				

※ 참고 사항

- 교육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인권교육, 종사자교육 1를 택하여 기재
- 교육내용 : 교육모듈(1p 참고) 중 선택하여 기재
- 이수시간 : 실제 이수 시간 기재
- 교육기관 확인 : 전문교육기관 직인
- 전문교육기관장 및 직인 : 해당기관 명칭 및 직인으로 대체

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 강사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사무실)		(FAX)			
	(휴대폰)					
	(E-MAIL)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직급)	
주요학력 (학위)	구분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1					
	2					
	3					
주요경력	구분	근무처	근무기간	소속	직급	비고
	1					
	2					
	3					
	4					
	5					
교육신청 동기						
<p>정신건강증진시설인권교육 강사 교육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인)</p> <p>보건복지부장관 귀하</p>						
<p>※ 첨부서류</p> <p>1. 재직증명서 1부</p> <p>2. 면허(자격)증 사본 1부</p> <p>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p> <p>4. 기타 증빙자료</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안내

(수집 · 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및 첨부자료(자격정보 등) 일체

(수집 · 이용 목적)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 신청 승인 및 관리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출일로부터 강사자격 소멸 후 3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명단 관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인권교육)

-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인권교육의 시간·대상·내용·방법,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인권교육)

-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 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3. 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 가. 국가인권위원회
 - 나.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 다.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 가.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 나.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 1. 17., 일부개정)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정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붙임 3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

연번	시·도	기관명	지정 년도	주소	전화번호
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	02-2125-9893
2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009	서울 광진구 능동로 398(중곡3동 30-1)	02-2204-0336
3	전남	국립나주병원	2009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061-330-4114
4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9	경남 창원군 부곡면 부곡로 145	055-536-6440
5	강원	국립춘천병원	2009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033-260-3237
6	충남	국립공주병원	2009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041-850-5884
7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2009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응암동 232-3)	02-300-8010
8	경기	경기도립정신병원	2009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031-288-0114
9	전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2009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063-240-2100
10	서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서울 강남구 논현1동 206 일양빌딩별관6층	02-3444-9934
11	인천	인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2	032-468-9911
12	경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경기의료원 2층	031-212-0435
13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G-five central plaza 522호	02-537-6171
14	서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200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68-5 민지빌딩 1층	02-859-3590
15	경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2009	경기 용인시 상하동 4	031-284-0360
16	광주	천주의성요한병원	2009	광주 북구 태봉로 32	062-510-3021
17	충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043-710-9214
18	경기	성안드레아정신병원	2010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20번길 109-84	031-639-3911
19	광주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7(구. 학동67번지) 한일빌딩 5층	062-600-1930
20	대전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8-9	042-486-0005
21	충북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1 보덕빌딩 2층	043-217-0597
22	충남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별관 301호	041-633-9183
23	전북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06 대림빌딩 2층	063-251-0650
24	부산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3 해정빌딩 7층	051-242-2575
25	부산	부산시립정신병원	201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39번길 104-36	051-312-1919
26	대구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대구 중구 서성로 20(매일빌딩 8층)	053-256-0199
27	대구	대구정신병원	2015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58	053-630-3000
28	제주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제주시 중앙로 613(아라일동)	064-717-3011
29	강원	강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06-5	033-251-1970
30	대전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2015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로 40번길 22, 양지빌딩 502호	042-822-2605